

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71호)

- '96. 11. 18.
- 총무재무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6. 11. 6 서초구청장
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6. 11. 14.
 다. 상 정 일 자 : '96. 11. 18.
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59회 임시회(폐회중) 총무재무위원회
 제2차 회의 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박우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 위임된 사무와 상호연관성이 있는 일부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, 등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.
- 이미 보건소장, 또는 등장 등에 위임된 사무중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위임내용을 세분화하여.
-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등장 등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등장 등에게 재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있어 우리 구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에 있음.

나. 주요분석

- 신규위임 : 45건
 -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할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즉 “조례 가. ~ 라.”호를 제외한 기타 사무 외 44건
- 업무환수 : 6건
 - 보건소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
- 위임내용 세분 신설 및 추가 : 71건
 - 위임내용이 포괄적·단편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인장업에 관한 사무 외 70건
- 삭 제 : 3건
 -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거 등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기설건축물 신고 외 2건
- 삭제후 규칙에 위임 : 30건
 - 재위임된 사무인 일시도로 점용허가 외 29건

다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: (생략) ※ 검토보고서 참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이 '95. 2. 24 개정되었는데 지금 제출한 이유와 '95. 2. 24 이후 위임된 내역은?
 - 업무량이 방대하고 다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다소 늦은 감은 사실임. 업무 위임 내역은 보건소 소관의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 제조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었으나 이번에 규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임.

- 서초구 전체적으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. 그러나 동사무소는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러한 업무들이 동장에게 새로이 위임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 할 것인가, 또한 동사무소의 계속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충원하지 않는 것인가?
→ 직원의 충원은 시에서 신규채용 등으로 각구에 배정하는데 그 때마다 완전한 충원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음. 이러한 사정으로 실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어도 해당 인력을 즉시 충원하지 못해서 결원상태에 있으며 절실한 필요성을 느낌.

4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 음

5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없 음